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1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0년 8월 21일
- 나. 발 의 자: 김화영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8월 2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8. 3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화영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 -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, 최근 ‘텔레그램 N번방’ 사건 등 아동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4)
  -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(안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선영)

- 본 건은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.
  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6조에서 개정된 조례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)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고
  - 안 제9조의4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
  
- 최근 ‘텔레그램 N번방’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되어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실정임.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화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0년 8월 일

발의자: 김화영 의원 외 명

## 1. 제안이유

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, 최근 ‘텔레그램 N번방’ 사건 등 아동에 대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.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4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(2020. 8. 21. ~ 8. 25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디지털성범죄 예방 등)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·유포 협박·저장·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9조의4(디지털성범죄 예방 등)</u>  <u>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</u>  <u>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</u>  <u>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</u>  <u>포·유포 협박·저장·전시하는 행</u>  <u>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의</u>  <u>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</u>  <u>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</u>  <u>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·</u>  <u>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